

금융위원회

의결 제2023-195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관	NH투자증권(주), KB증권(주)
임원	
직원	

2. 조치내용

- NH투자증권(주) 및 KB증권(주)에 대하여 각각 과징금 1,223,000,000원을 부과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- 증권신고서(모집) 제출의무 위반
- NH투자증권(주)은 파생결합증권(이하 DLS)의 발행인으로서 '18.8월~'19.11월 기간중 주선인인 KB증권(주)을 통해 총 24개 DLS에 대한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총 953명의 투자자에게 4,077억원을 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총 3회 미제출한 사실이 있음
- KB증권(주)은 DLS의 주선인으로서 '18.8월~'19.11월 기간 중 NH투자증권(주)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할 수 없는 총 24개 DLS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총 953명의 투자자에게 4,077억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

나. 근거법규

-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29조 제1항 제2호, 제430조 제1항
-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79조 제2항 제1호